

2024 소득세법 실무 수정사항(2024.5.17. 현재)

p. 1565 수정사항

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판정기준 (2023년 귀속기준)



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다음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를 말한다.

- ☞ 2019.1.1.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의 소득분에 대하여 추계결정 및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.
(2018.2.13. 영 부칙 13조)

업 종	기존사업자		신규 사업자
	2023년 귀속분 신고		
	2022년 수입금액	2023년 수입금액	2023년 수입금액
㉠ 농업·임업 및 어업, 광업, 도매 및 소매업(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), 부동산매매업 ¹⁾ , 그 밖에 아래의 '㉠, ㉡ 및 ㉢'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	6,000만원	3억원	3억원
㉡ 제조업, 숙박 및 음식점업, 전기·가스·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, 수도·하수·폐기물처리·원료재생업, 건설업(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한다),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(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으로 한정한다) ²⁾ , 운수업 및 창고업, 정보통신업, 금융 및 보험업, 상품중개업,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(인적용역만 해당한다)³⁾	3,600만원	1억5천만원	1억5천만원
㉢ 인적용역³⁾	3,600만원	7,500만원	7,500만원
㉣ 부동산임대업 ⁴⁾ , 부동산업(부동산매매업 ¹⁾ 은 제외한다), 전문·과학 및 기술서비스업, 사업시설관리·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, 교육서비스업,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, 예술·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, 협회 및 단체,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(인적용역은 제외한다) ³⁾ , 가구내 고용활동	2,400만원	7,500만원	7,500만원

(생략)

*3. **2023년 귀속분부터 적용한다.**(소령 143조 ④ 나, 다, 2023.2.28. 개정)

(생략)

p. 1566 저자 TIP 박스 內 上 8, 9째 줄

(수정 전)

그런데 2023.2.28. 세법 개정으로 2023년 귀속분부터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**판정시 ㉢의 업종군에서 ㉠의 업종군으로 변경되었다.**(소령 143조 ④ 나, 다)

(수정 후)

그런데 2023.2.28. 세법 개정으로 2023년 귀속분부터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**직전연도 수입금액 판정에서만 ㉢의 업종군인 3,600만원 기준으로** 변경되었다.(소령 143조 ④ 나, 다)